

수단共和國 商標制度 說



南 士 俊
<辨 理 士>

1. 登錄의 制限

수단에서는 다음에 揭記하는 것에 대하여 商標로서 登錄할 수가 없다.

(1) 商品의 固有한 性質 또는 그 產業的 機能에 의해 必要한 形狀이나 形態로서 이루어진 商標

(2) 去來의 過程에서 어떠한 特殊性, 例를 들면 質, 量, 用途, 價値, 原產地를 指示하기 위하여 使用할 수가 있는 標識 기타의 表示로서 專的으로 이루어지는 商標

(3) 현재 行하여지고 있는 言語 또는 이나라에서 善良하게 確立된 商慣習에 따라 關係商品의 通常呼稱이 된 商標

(4) 公共秩序나 美風良俗에 反하는 상표 및 關係商品의 性質, 出所, 製造方法, 特徵 또는 用途, 適合性에 관하여 流通業界나 一般需要者를 欺瞞하거나 混同을 일으킬 意圖로서 된 商標

(5) 어떠한 國家, 政府間의 國際機關 또는 國際協定에 基礎하여 設立된 機關의 紋章, 旗章, 기타의 記章,

이니셜, 名稱이나 略稱을 當該國의 主管廳 또는 當該國際機關의 承認을 받지 않고 複製하거나 模倣하는 商標

(6) 국가가 採用하는 公的 記號 또는 印章을 當該國의 主管廳의 承認을 얻지 않고 複製하거나 模倣한 상표

(7) 宗教的, 部族의 首班의 肖像 또는 이떠한 宗教의 意味를 갖는 肖像과同一하거나 類似한 상표

한편 利害關係가 있는 第3者의 同意가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 다음에 例舉하는 商標도 登錄될 수가 없다.

(1) 有效하게 優先權을 主張한 者의 出願中인 商標 또는 그 登錄을 받은 상표와 同一한 商品이거나 아니면 當該商標의 사용이 公衆을 欺瞞할 憂慮가 있는 其他의 商品에 関係되는 것을 公衆에게 欺瞞을 할 憂慮가 있는 方法으로 模倣하는 상표

(2) 第3者에 屬하는 상표로서 이 나라에서 널리 알려진 것을 公衆에게 欺瞞을 할 憂慮가 있는 方法으로 한 그 全部 또는 1部를 複製, 模倣, 繼譯, 轉寫를 構成한 商標

(3) 第3者的 權利를 侵害하거나 또는 不正競爭防止法에 違反하는 상표등이다.

2. 登錄出願

先使用主義를 採用하고 있는 수단에서의 商標登錄出願은 다음에 揭記하는 事項을 包含시켜 所定의 樣式에 의해 登錄管掌者(主務長官이 任命함)에게 提出한다.

(1) 商標를 登錄하겠다는 要旨의 請求

(2) 出願人의 名稱 및 住所

다만 출원인이 國外에 居住할 경우에는 수단國家가 認許한 公認代理人을 通過하여야만 한다.

公認代理人의 資格은 수단에 居住하는 수단國籍을 가진 辯護士, 同一業務에 從事하는 公認會計士, 商標登錄局 또는 商標代理人中에서 5年以上的研修를 받은 者이면 된다.

그리나 출원이 수단 辯護士會會員이 아닌 者를 代理人으로 했을 경우는 當該出願인이 署名을 한 委任狀을 願書에添附해야 한다.

한편 출원에서 瑕疵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출원인이 그 출원일로부터 3個月 以內에 그 補正을 하지 않았을 때 登錄管掌者는 補正未完成通知書를 출원인에게 送付하게 되며 출원인이 指定한 期間內에 當該瑕疪를 補正하지 않은 경우 當該出願을 抛棄한 것으로 看做한다.

또한 商標登錄出願을 할 때 출원인은 自己의 國籍을 明示하고 各願書에는 法人證明書, 組合登錄證明書, 商標登錄籍謄本, 其他 登錄管掌者の 承認을 받는데 充分한 書面을添附하여야 한다.

外國制度紹介

이와 같은 證明書, 謄本, 기타의 文書는 아랍語 또는 英語로서 作成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아랍語 또는 英語로 된 認證翻譯文을 提出하면 된다.

3. 出願公告 및 異議

登録管掌者는 商標登録出願을 拒絶 또는 이것을 無條件, 그렇지 않으면 訂正이나 修正등의 條件과 使用方法, 場所, 其他事項에 관한 制限으로 當該商標法令이 定한 바에 따라 自己가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條件을 붙여서 認容할 수가 있다.

그리고 登錄管掌者에 의한 商標登録의 拒絶處分 또는 賦課되는 條件, 訂正, 修正이나 制限의 處分에 대한 不服은 法院에 申請하도록 되어 있다.

商標登録出願이 無條件 또는 條件이나 制限을 加하여 認容했을 때는 수단에 居住하는 利害關係人은 公告日로부터 6個月 以内에 當該商標의 登錄에 異議申請을 提起할 수가 있으며 수단에 居住하지 않는 者는 公告한 날로부터 8個月 以内에 다음에 揭記하는 理由의 하나에 根據하여 當該商標의 登錄에 異議를 申請할 수가 있다.

(1) 商標가 商標法令이 定하는 바에 의해 登錄될 수가 없다는 點

(2) 商標가 欺瞞行爲에 의해 取得되었다는 點

(3) 商標를 사용하려는 善意의 志望이 出願日에 없었다는 點과 출원인이 그 상표를 有效하게 抛棄했다는 點

異議申請이 있으면 登錄管掌者는 登錄出願人에 異議申請書의 寫本을 送付하며 그 사본을 受領한 출원인은 所定期間내에 登錄管掌者 앞으로 自己의 登錄出願이 正當하다는 理由를 記錄한 答辯書를 提出하여야 하는 데 이 節次를 慎慢히 하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看做하게 된다.

출원인이 答辯書를 期間内에 제출하면 등록관장자는 다시 異議申請人에게 그 寫本을 보내고 請求가 있으면當事者雙方을 審問하거나 證據方法을 調査한 뒤에 登錄의 與否를 決定하고 등록을 해주는 경우 어떠한 條件, 訂正, 修正 또는 制限을 붙여서 할 것인가를 決定한다.

登錄管掌者の 決定에 대하여 法院에 不服申請을 할 수가 있다.

4. 登錄의 存續期間

出願公告에 異議申請이 없었거나 또는 登錄管掌者の 決定 및 法院의 判決로서 登錄이 認容되는 것으로 確

定되면 등록관장자는 無條件 또는 여러가지 條件이나 制限을 加하여 當該商標의 登錄節次를 끝내주고 自己의署名이 된 登錄證明書를 發給한다.

商標가 이와 같은 결차를 밟아 등록되면 그 상표는 出願한 날로부터 登錄한 것으로 看做하고 商標存續期間은 登錄日로부터 10年間이 된다.

그리고 當該存續期間 또는 그 후의 10년간의 존속기간으로 6個月 以内에 언제라도 所定의 料金을 納入하는 出願節次만 밟으면 更新登錄을 할 수가 있다.

更新登錄에 있어서 指定商品을 그 目錄에서 除外한以外에는 商標 및 商標의 登錄에 관계되는 指定商標의 목록에 대해서는 어떠한 變更도 加해서는 안된다. 또한 登錄商標의 更新出願期間을 經過한 경우에는 6個月의 猶豫期間을 두고 있으며 追加料金을 別途로 納入하는 것을 條件으로 한다.

5. 登錄의 讓渡 및 移轉

商標는 그 商標登録에 관계되는 商品의 全部 또는一部에 대하여서 양도나 이전을 할 수가 있고 登錄名義人の 事業의 全部 또는一部의 移轉도 獨立하여 양도 및 이전을 할 수가 있다.

商標를 讓渡할 때는 어떠한一方의 當事者가 讓渡證書日로부터 6個月 以内에 所定의 料金을 納入하여 登錄申請을 한 경우에만 그 讓渡의 效力이 미치게 된다.

양도의 등록신청이 있을 때 登錄管掌者は 正當한 權利가 證明되었다고 認定하면 登錄簿에다 讓渡의 登錄을 해준다.

6. 商標의 使用許諾

自然人 또는 法人 어느 누구든지 登錄名義人の 承諾을 얻어 商標使用을 할 경우 그 사용은 當該登録名義人の 사용으로 看做하게 된다.

登錄商標使用에 관한 決定은 어느一方의 當事者가 決定의 書面을 낸 날로부터 6個月 以内에 所定의 料金을 納入하여 그 등록을 申請해야 한다.

使用許諾期間은 어떠한 경우에도 商標權自體의 存續期間을 超過해서는 안된다.

7. 登錄의 取消

商標登録의 取消는 法院이 利害關係人 또는 登錄管掌者の 請求에 의해 다음에 揭記하는 경우에 命한다.

(1) 商標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등록될 수가 없는 상표가 登錄되었을 때

(2) 商標의 등록이 欺瞞에 의해서 取得되었을 때